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25.2.14.)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선을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 또는 유료 전환시 사전 동의·고지 기간 구체화

- 1)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 또는 유료로 전환되기 전 증액의 경우에는 30일, 유료 전환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증액 또는 전환의 취소 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함

나. 반복 요구가 허용되지 않는 최소 기간 구체화

- 1)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7일 이상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반복 간섭에서 제외함

다.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 1)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에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

유형을 추가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및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을 신설함

라. 민원다발쇼핑몰 공개 절차 위임 근거 신설

- 1)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제도의 구체적인 공개 방법, 절차 등을 고시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개보위 권고사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7. 18. ~ 8. 27.)

3) 행정규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를 “사업자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한다)

제20조의2 및 제2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유료 전환시 사전 동의·고지 기간)

법 제1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30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14일을 말한다.

제27조의2(반복 요구가 허용되지 않는 최소 기간) 법 제21조의2제1항제5

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일을 말한다.

제3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보 공개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 제2호에 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법 제13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	------------	----------	----------	-----------

별표 1 제2호의 위반행위 “더.”를 “러.”로, “러.”를 “머.”로, “머.”를 “버.”, “버.”를 “서.”로, “서.”를 “어.”로, “어.”를 “저.”로, “저.”를 “처.”로, “처.”를 “커”로 한다.

별표 1 제2호에 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터.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32조 제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	------------	----------	----------	-----------

별표 1 제2호의 위반행위 중 “커.”를 “퍼.”로, “터.”를 “허.”로, “퍼.”를 “고.”, “허.”를 “노.”로, “고.”를 “도.”로, “노.”를 “로.”로, “도.”를 “모.”로, “로.”를 “보”로, “모.”를 “소.”로, “보.”를 “오”로, “소.”를 “조.”로, “오.”를 “초.”로, “조.”를 “코.”로 한다.

별표 3 제2호에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법 제13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5조제4항제5의2호	100	200	500
--	----------------	-----	-----	-----

별표 3 제2호의 위반행위 “사.”를 “아.”로, “아.”를 “자.”로 한다.

별표 3 제2호에 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5조제4항제5의2호	100	200	500
---	----------------	-----	-----	-----

별표 3 제2호의 위반행위 중 “자.”를 “카.”로, “차.”를 “타.”로, “카.”를

“파.”, “타.”를 “하.”로, “파.”를 “거.”로, “하.”를 “너.”로, “거.”를 “더.”로,
“너.”를 “러.”로, “더.”를 “머.”로, “러.”를 “버.”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	제13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단서 또는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u>사업자등록증</u>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사업자등록증</u>	2. <u>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한다)</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설>	제20조의2(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유료 전환시 사전 동의·고지기간) 법 제1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는 경우

<u><신 설></u> 제30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 공개 등) ①·② (생략) <u><신 설></u>	<u>에는 30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14일을 말한다.</u> <u>제27조의2(반복 요구가 허용되지 않는 최소 기간) 법 제21조의2 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일을 말한다.</u> 제30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 공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정보 공개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4449